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일

3. 제안이유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 3,000백만원

○ 필요성

-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포함한 충청북도의 각종 행사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진흥 및 세계 천연물산업 선도를 위한 출연금 반영 필요

○ 출연내역

(단위:백만원)

재원별	계	2024년 (기투자)	2025년		
			계 (A+B)	기정 (A)	금회요구 (B)
계	13,672	3,254	10,418	7,418	3,000
2025제천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개최	13,672	3,254	10,418	7,418	3,000
국비	3,288	974	2,314	2,314	-
도비	4,692	1,140	3,552	2,552	1,000
시비	4,692	1,140	3,552	2,552	1,000
기타	1,000	-	1,000	-	1,000

○ 산출근거

- 2025년도 금회 출연금 : 3,0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000, 기타(후원금) 1,000)

※ 기타사업비 1,000백만원은 엑스포 후원금 예상액으로 재단 출연 후 사업비 활용 예정

- 회장시설 조성 : 300백만원
- 홍보·유치 : 40백만원
- 회장운영 : 460백만원
- 예비비 : 1,200백만원
- 수익금(후원금) : 1,000백만원

○ 근거법령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5조)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 산업 육성·진흥사업	4. 바이오 분야 홍보·교육사업
2.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
3.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	6.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관·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	-----------------------

- (제7조) 충청북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이오식품의약품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임.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재단을 통한 행정적 지원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번 엑스포는 기존 한방산업에서 천연물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B2B 중심의 국제행사로 추진될 계획으로, 충북의 천연물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인 만큼 재단을 통한 사전 기획 및 기반 조성은 타당성이 있음.

다. 총 출연금 3,000백만 원은 도비 1,000, 시비 1,000, 기타 1,000으로 구성되며, 회장 조성(300백만 원), 운영(460백만 원), 홍보(40백만 원), 예비비(1,200백만 원), 수익금(1,000백만 원)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예비비가 전체 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1,200백만 원으로 고액 편성되어 있어, 사용계획 및 세부 내역의 구체화가 필요함. 행사 운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라.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출연 목적 또한 도의 바이오산업 정책 방향과 부합함.

예비비의 고액 편성 및 후원금 수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익금 1,000백만 원은 후원금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유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가 요구됨.

향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에는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